

원가계산에 의한 의료보험 약가산정 방안의 검토



글 · 홍원조 |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지도위원

1. 의료보험약가 산정방안으로서 실거래가 상환제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체제는 의료보험수가가와 의료보험약가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보험수가는 인적자원인 의료인력의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로서 기술료, 처방료 등을 의미하며, 보험약가는 물적자원인 재료, 약품 등에 대한 수가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이윤은 그 중 인적자원의 제공에 대한 수가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물적자원의 제공에 대한 수가에 대해서는 이윤이 일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의 의료보험약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제약회사가 공장도 출하가를 제약협회에 신고하고, '의료보험약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의보약가를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여 결정하는 신고제 의보약가 결정방식을 시행하였으나 병원 등이 경쟁을 통해 고시가 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함에 따라 약가에서 이윤을 챙긴다는 지적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요령'을 개정·고시하여 현행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의료보험약가 책정방식은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실

제 납품한 가격으로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시한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기본방향

- 보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 및 투명화
 -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배제 및 과잉투약 방지
 - 제약기업간 의약품 품질경쟁 유도
- 약가차액을 소비자에게 환원
 - 의약분업 등의 약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 의약품 실거래내역 제출 대상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이고 실거래자료 제출내역 및 내용은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 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에 기재하여 매분기별로 제출

■ 기준약가 조정

전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실거래내역(구입 단가, 구입량, 가중 평균가 등) 및 사후관리에 의하여 현지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체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구입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약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약가를 동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 조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시행으로 병원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마진을 원천적으로 챙기지 못하게 막았으며 병원이 이면거래, 할인, 할증 등을 통해 이윤을 챙기던 의약품의 과잉처방이 차단되고 의사가 적정한 품질과 가격의 약을 쓰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동일약품에 대한 실거래가격이 대상 요양기관마다 상이하게 발생되어 약품별 단일기준가격의 책정을 위하여 편의상 전체 요양기관 실거래가격을 가중평균하여 의약품기준약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제약업체에서 의약품 생산에 실제 발생한 의약품생산원가를 기준한 의약품의 적정판매가격과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어 실거래가격을 기준한 의약품기준가격의 책정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 타당성이 미흡하며.
-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입시에 구입단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의약품 실거래가격이 높게 책정 될 여지를 가지고 있음
- 의약품 거래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공정화 및 투명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적정판매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약가차액은 제약회사의 이익으로 이전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국민의 의료비부담 증가를 초래할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 거래가격을 인하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약업소는 요양기관과 담합하여 음성적인 뒷거래, 이면계약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을 행할 소지를 가지고 있음

이상의 제 문제점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적정판매가격을 기

준으로 의약품기준가격을 책정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료됨.

3. 원가계산에 의한 의약품기준가격의 산정

가.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판매가격의 산정전제 및 방법

- 의약품생산기업의 회계처리 및 원가계산근거 자료의 정확한 파악과 보험약품의 원가와 일반약품원가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원가계산을 위하여
 - 신뢰성이 보장되는 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 원가계산 자료수집시 국가차원에서 협조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제약회사의 경영구조상 투입비용(영업외비용 등)의 차이로 인한 동일품목에 대한 원가의 상이, 경영개선 노력을 않는 회사가 유리한 약가를 받게 되는 모순 등의 배제를 위하여
 - 생산업체의 경영여건 및 기업체무 구조가 각기 다르게 발생되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에 대한 원가계산을 생산업체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약업계의 표준경비비율을 산정하여 의약품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판매가격 산정에 적용토록 함

- 기준생산량의 변동, 환율변동, 인건비 및 물

가의 변동 등 중대한 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가변동 요인별로 의약품 원가의 일부만을 조정·가능하게 하여 원가계산에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낭비를 배제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 부분적인 원가변동 요인만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원가계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의약품별 원가계산 산정모델을 구축함

나.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판매가격 산정기준

의약품 적정판매가격은 의약품제조원가에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계산함. 의약품원가계산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의약품제조원가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적정이윤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1) 재료비 산정기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는 의약품의 구성을 이루는 재료의 가치로서 국내 구입재료비와 수입 재료비로 구분하여 재료원단위에 재료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 재료원단위

재료원단위는 재료사용 실적 및 학문적 이론을 통하여 의약품 단위당 표준재료원단위를 설정한다.

② 재료단가

재료단가는 수입재료와 국내구입재료로 구분하여 원가계산기간의 재료단가를 산정한다.

(2) 부재료비

부재료비는 의약품제조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로서 부재료원단위에 구입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노무비 산정기준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의약품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써 직접노무원단위에 노무단가를 하여 계산한다.

① 직접 노무원단위

직접 노무원단위는 직접 노무인력의 공정별·직종별 작업인원, 작업시간 및 제품제조수량 등을 기준으로 의약품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한다.

② 노무단가

근로기준법상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제조기간내의 노무단위당 단가를 계산한다.

(2)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정하여 제약업계 규모별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비율을 계산함

3) 경비 산정기준

조사대상 업체의 경비계정과목 중 유틸리티 항목 등 소요물량의 파악이 가능한 비목은 제품단위당 원단위를 파악하여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원단위 파악이 불가능한 비목의 경비는 제품별 직접비는 직접 파악계산하고 공통경비는 타당한 배부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산함.

4) 일반관리비 산정기준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공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함.

일반관리비율은 매출원가대비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제약업계의 실적자료를 매출원가로 나누어 계산함.

5) 적정이윤 산정기준

적정이윤은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바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정이윤이라 함은 자본의 이용대가로 돌아온 이익이 과대하지도 과소하지도 않은 적정한 이익을 말하며 자본의 크기에 비해 적정한 크기의 이윤을 의미함.

적정이윤율은 제약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기자본을 무위험자산에 투자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무위험 수익율)에 제약사업의 위험도를 감안한 위험보상수익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 등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을 가산한 비율이 적정이윤율이라 하고 제약업계 표준적정 이윤율은 적정이윤금액을 제조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결어

보험약가를 시장거래가격에 의해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인 경쟁에 의한 품질향상과 가격인하 기능을 살리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고, 외국 제약회사만 그 이익을 챙기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주관하에 원가계산을 통하여 합리적인 약품가격을 고시하고, 요양기관과 공급업체 간에 경쟁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요양기관에 대한 마진은 일종의 관리원가로서 정부정책에 의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²⁰⁰¹